공인회계사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재완*
이병화**

<요 약>

최근 기업의 부실감사와 분식회계등의 공인회계사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감사인의 윤리수준은 감사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는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공인회계사의 윤리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감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1) 감사인의 개인특성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감사회사의 특성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감사회사의 조직특성은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상호작용하여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개인특성변수로 감사인의 근무연수, 학력, 교육훈련변수를 선정하였고, 감사회사의 조직특성변수로 감사회사의 규모와 외국법인과의 제휴여부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인의 근무연수는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감사인의 학력과 교육훈련정도는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인의 학력과 교육훈련정도가 높을수록 감사인의 윤리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첫째, 감사회사의 규모와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사회사의 규모와 외국회계법인과의 제휴여부는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감사인의 교육훈련변수와 외국법인과의 제휴여부는 상호작용하여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법인과 제휴되지 않았을 경우 교육훈련수준이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여 높아질 경우 감사인의 윤리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감사품질, 윤리수준, 감사인의 개인적 특성, 감사회사의 조직특성

* 경북대학교 박사과정, pjaewan@freechal.com, 011-9382-2738, 주저자
** 거제대학 세무회계정보과 전임강사, bhlee@mail.koje.ac.kr, 055-680-1543

논문접수일 : 2004년 4월, 게재확정일 : 2004년 5월

Ⅰ. 서 론

회계는 기업내·외의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이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무보고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도되어야 한다.

회계감사(Accounting Audit)는 회계를 종결짓는 행위로 회계의 산출물인 재무제표에 신뢰성과 객관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감사의 역할은 1) 회계정보에 대해서 감사를 적용함으로써 유도되는 "회계정보의 가치증진(the enhanced value of accounting information)"의 정의를 입증하는 것이며, 2)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정보 필요성에 대하여 감사에 의한 부가가치를 관련지으며, 3) 감사직능이 '부가가치'를 어떻게 창조하며, 정보이용자들간의 필요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지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회계감사서비스는 공익성을 지닌 준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계감사서비스의 이러한 성격은 감사인의 자질과 윤리수준이 회계감사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감사품질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기술에 의해서 결정된다. 특히 감사인의 감사 기술적 능력이 유사한 경우에는 독립성이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주된 변수가 되는 것이다.

감사인의 독립성은 외관상 독립성과 정신적 독립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관상 독립성의 유지여부는 정신적 독립성보다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제반 법규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적 독립성은 측정하기 힘든 감사인의 심리적 상태이다. 궁극적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은 외관상 독립성을 전제로 한 정신적 독립성 확보 없이는 달성하기 힘들다. 정신적 독립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감사인의 윤리일 것이다. 감사인의 윤리는 제반법규나 직업윤리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제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이익추구의 조직중심적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취할 것인가, 또는 명성추구의 전문가적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취할 것인가의 선택도 감사인의 윤리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감사인의 윤리수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이 감사인의 윤리수준은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감사인의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감사품질에 결정적영향을 미치는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는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윤리수준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감사인의 조직특성과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개인적특성과 조직특성이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변수들간의 상호작용효과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감사인의 윤리수준을 높이고 감사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이나 회계감사기준의 개정에 있어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감사품질과 공인회계사 윤리수준

가. 감사품질의 의의

DeAngelo(1981)의 연구에서, 그는 감사품질을 “증권 시장을 평가하는 특정 감사인이 (a) 피감사회사의 회계시스템의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b) 그 위반사항을 보고할 결합 확률(joint probability)”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DeAngelo의 정의에서 특정감사인의 발견확률은 감사인 개개인의 능력에 좌우되고, 그 위반사항을 보고할 확률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관련한 문제가 된다.

감사품질은 감사기술과 독립성으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린다. 감사기술은 감사인들이 부정과 오류를 적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증거자료를 입수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감사기술은 다시 개별감사기술과 일반감사기술로 나눌 수 있다. 개별감사기술은 외부적 증거를 획득하는 것으로 증거능력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 증거 수집시 표본조사나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 일반감사기술은 내부적증거를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고, 거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증거를 획득하게 되고 거의 대부분 표본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사기술 적용을 위험과 결부시켜 보면 위험이 높을 때 개별감사기술을 채택하고 위험이 낮을 때는 일반감사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감사인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기술의 체계적인 개발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외부감사의 질적인 개선방안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체계적인 개선방안의 형태를 확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일이라 하겠다. 감사업무의 질적인 개선방안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즉 회계법인과 관련한 요인, 감사인과 관련한 요인, 외부적 환경적인 요소로 나눌 수 있다. 회계법인과 관련한 요인으로서는 감사회사의 규모, 외국회계 법인과의 제휴 여부등이 있으며, 감사인과 관련한 요인으로서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감사인의 자격개발, 감사인의 조직 강화등이 있다. 마직막으로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규제제도, 감리제도, 감사계약제도등이 있다.

(1) 회계법인과 관련한 요인

우리나라의 감사조직은 점점 더 외국법인과의 제휴 및 합병을 통하여 거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감사와 관련한 제반여건이 취약한 상황에서 감사품질의 개선을 위한 감사조직의 대형화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피감사회사는 감사인이 행하는 감사의 품질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의견을 주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 감사조직이 거대하다면 감사인은 감사품질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피감사회사와의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감사품질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DeAngelo의 1981년 8월의 연구와 12월의 연구를 먼저 언급할 수 있다. 그의 첫 번째 연구에서는 초도감사시의 가격할인(Low Balling)의 규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12월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특정 피감사회사의 수입이 감사회사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감사인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려는 요인이 줄어든다. 그리하여 감사에 대해서 정보이용자가 인식하는 감사의 품질은 향상된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서 감사회사의 규모가 감사품질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관과 백원선(1998) 은 우리나라 Big 6 제휴법인과 국내법인(Big 6 제휴 회계법인을 제외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차별화 되고 있는지를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감사보수가 경쟁적으로 결정되는 감사시장에서는 우수한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사인보다 높은 감사보수를 받을 수 있고, 감사인간에 능력이 동일하다면 감사수행 업무보다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한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Big 6 제휴 회계법인과 국내법인간에 감사보수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Big 6 제휴 회계법인은 국내회계법인에 비하여 감사투입시간이 뚜렷하게 많았다. 이는 Big 6 제휴 회계법인의 감사능력과 기술이 국내법인에 비하여 낮지 않다면, Big 6 제휴 회계법인들이 국내 회계법인보다 우수한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2) 감사인과 관련한 요인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감사인의 개인특성에 대한 연구로서 이원창(198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을 a) 감사인의 연령, b) 감사인의 전업경력, c) 교육훈련, d) 조직간의 이동정도의 차이로 들어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감사인의 개인특성에 따라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Waller와 Felix(1987)의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전업경력은 판단의 정확성이나 의견일치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Abdolmohammadi와 Wright의 연구에서는 구조적인 업무, 준 구조적인 업무, 비구조적인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감사경험의 수

준이 서로 다른 연구대상자들의 판단을 비교하여 경험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조사, 분석한 결과 비구조적인 업무와 준 구조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경험이 많은 감사인의 집단과 적은 집단 간에 중요한 의사결정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감사품질과 윤리수준과의 관계

감사인의 독립성은 외관상 독립성(공인회계사법 제21조와 제33조, 직업윤리규정 제17조, 회계감사기준 제7조)과 정신적 독립성(회계감사기준 제7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신적 독립성(independence in mental attitude)은 감사인이 모든 감사과정에서 꾸밈과 거짓됨이 없는 곧은 마음과 객관성, 즉 정신적으로 정직한 자세를 견지하며 주위의 여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공정불편한 견해를 유지하였을 때 확보된다. 외관상 독립성(independence in appearance)이란 정보이용자들이 해석하거나 느끼게 되는 독립성으로서 그들이 판단하기에 특정 감사인이 정신적 독립성을 유지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때 확보된다. 외관적인 여건을 고려 할 때 독립성에 의문을 초래할 만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감사인에 대한 신뢰성은 저하되며, 따라서 외관상의 독립성이 인정될 수 없다. 감사인의 정신적 독립성을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정보이용자가 외부적으로 나타난 감사환경 때문에 독립성에 의문을 품게 될 경우에는 감사 자체의 의미가 상실된다. 물론 외관상의 독립성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독립성이 반드시 유지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외관상의 독립성은 정신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요건이 된다. 외관상 독립성의 유지여부는 정신적 독립성보다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제반 법규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적 독립성은 측정하기 힘든 감사인의 심리적 상태이다. 궁극적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은 외관상 독립성을 전제로 한 정신적 독립성 확보 없이는 달성하기 힘들다. 정신적 독립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감사인의 윤리일 것이다. 따라서 감사품질은 감사인의 정신적 독립성, 외관상 독립성, 및 감사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표 1〉 감사품질의 구성

감사품질(Audit Quality) = 감사기술 × 독립성 = 감사기술 × 외관상 독립성 × 정신적 독립성

그러나 감사품질이 높다고 해서 감사인의 정신적 독립성이 높다는 가설을 수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신적 독립성이 낮더라도 외관상 독립성이나 감사기술이 높으면 감사품질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감사인의 윤리는 제반법규나 직업윤리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제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이익추구의 조직 중심적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취할 것인가 또는 명성추구의 전문가적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취할 것인가의 선택도 감사인의 윤리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인의 윤리수준은 독립성, 나아가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이 감사인의 윤리수준은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감사인의 윤리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Ⅲ. 선행연구

1. Loeb의 연구

공인회계사의 윤리적 행동을 연구하여 전문가로서의 규범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발견하고 윤리적 행위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자기규제 내지는 통제를 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미국의 Milwaukee, Wisconsin의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실증연구이다. Loeb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공식적인 통제체계, 업무의 특성, 윤리성향 및 윤리문제 접촉기회, 동료 공인회계사와의 관계를 사용하였다.
공인회계사 사이에서의 윤리적인 행동의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측정치를 개발하여 종속변수 측정에 이용했다.
Loeb의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행동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것은 계층화 체계에서 공인회계사의 위치와 개인 공인회계사의 독특한 특성의 2가지 주요소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계층화 체계에서 공인회계사 상위의 고객을 갖는 경우 하위의 고객을 갖는 경우보다 규정을 범하게 하는 압력을 덜 받는다. 상위의 고객을 갖는 회계사무소 형태는 주로 대규모 회사법인인 바 대규모 회계법인은 교육배경이 보다 좋은 공인회계사를 모집하고 또한 2~3명의 고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압력에 더 잘 대항하는 경향이다. 고객의 지위에 상관없이 갈등상황 발생빈도가 높을수록 윤리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은 더 높다. 계층화되지 않은 사무실 형태에서는 사무실의 동료가 제한적이지만 윤리행동에 영향을 준다. 윤리에 대한 전반적 사무실 분위기가 엄격한 곳에서는 규정을 범하게 하는 외부압력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허용적 분위기에서는 압력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우유부단함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계층화된 사무소에서는 윤리에 대한 사무실의 전반적 분위기가 윤리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대신 윤리행동이 사무실에서의 공인회계사의 지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가 높을수록 규정을 범하는 비율이 낮았다. 지위가 낮은 공인회계사들은 승진하기 위해 고객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하며 따라서 고객의 비윤리적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인 것 같았다.
개인적 수준에서는 공인회계사의 윤리적 행동이 윤리성향, 윤리문제를 접하는 기회, 미국공인회계사회 회원여부 등에 의해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외부압력에 대한 저항력이 크고 윤리문제에 접하는 기회가 많을수록 윤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윤리문제에 접하는 기회가 적은 자는 규정의 변화를 모를 수 있고, 과거에 알고 있던 윤리내용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공인회계사회 회원인 경우, 공식적 징계를 피하고자 윤리규정을 덜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Goldman과 Barlev의 연구

감사인의 독립성이 회계감사에서 중요함을 강조하며 독립성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3가지의 이해관계 상충에서 찾고 있다.

가. 감사인과 피감사회사의 이해상충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원하나 그 감사보고서로 인해 잠재적인 투자자가 피감사회사에 투자하지 않는다든지 채권자가 신용제공을 안 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감사회사의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또한 피감사회사의 경영자는 주주 및 제 3자에게 좋은 성과를 보이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감사인과 피감사회사간에는 잠재적인 이해의 상충이 존재한다.

나.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이해상충

주주는 경영성과의 평가에 감사인의 보고서를 의존하면 경영자는 주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보다 더 유리한 감사보고서를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의 상충이 있다.

다. 감사인의 이익과 전문직업수준의 상충

감사인은 전문직업기준을 범함으로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기준위반을 거절함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 때의 이익이나 손실의 원인은 감사인의 전문직업수준과 감사인간의 이해상충인 것이다.

위의 3가지 이해상충은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며 이중 감사인과 피감사와의 세력균형의 측면에서 다룬 것이 특징이다. 세력균형이란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으로 하여금 전문직업기준에 의존하지 못하게 하는 압력과 그 압력에 대처하는 능력과의 함수을 말한다. 감사인이 피감사회사로부터의 이런 압력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은 이해상충집단의 상대적 세력의 함수라고 본다. 종속변수는 힘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압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한편 피감사회사의 힘의 원천은 (1)감사인의 책임 및 교체권한 (2)감사보수의 결정 (3)감사업무의 여건 결정에 있으며 감사인의 힘의 원천은 (1)해결되는는 문제의 성격 (2)제공하는 해택의 크기 (3) 직업윤리규정의 통제에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피감사회사의 힘의 크기와 감사인의 힘의 크기를 비교해 볼 때 피감사회사의 힘의 크기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감사인의 대항력을 높이기 위해 세력균형을 유도해야 한다고 한다. 그 방법으로는 감사인의 교체제한, 감사위원회 제도도입, 재무보고기준의 엄격화, 법적 의무의 강화, 감사인 자신의 노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인의 경영자문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법이라는 결론이다.

3. Schulte, Jr의 연구

미국공인회계사의 윤리위원회가 의견서에서 경영자문의 제공여부가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 주장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없음을 착안, 감사보고서 이용자를 상대로 질문서에 의한 의견조사를 했다. 결론은 피감사회사에게 경영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제3자 즉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이해관계와 상충하지 않을 것이라는 종래의 입장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인회계사가 피감사회사에 경영자문 제공을 그만두라는 것은 아니며 회계법인 조직의 대형화, 계층화, 직능의 전문화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4. Nichols와 Price의 연구

감사인과 피감사회사간의 모형을 인간상호관계 교환이론을 이용한 윤리적 연구이다. Goldman과 Barlev 모델에서 갈등상태에서의 피감사회사의 권한이 감사인의 그것보다 크다고 하고 이같은 권한 불균형의 원인으로는 감사기능이 일상적이고 그 서비스 수혜자가 제3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이같은 불균형은 감사인과 피감사회사 사이에 의존하는 의존성의 정도가 상호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피감사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반대합부와 감사법인에 의해 제공되는 반대합부의 교환을 비교할 때 전자가 보다 높게 평가되고 후자가 보다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피감사회사가 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였던 바 경영자문 서비스의 유용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그 원가부담이 낮을수록 감사인이 피감사회사로부터 받는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5. Finn, Chonko와 Hunt(1988)의 연구

공인회계사들이 직면하는 윤리문제의 성격 및 정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윤리문제의 성력 및 정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윤리문제를 축소시키는데 있어서 사원(Partner)과 윤리 규정의 유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AICPA회원을 모집단으로 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의 95%는 개인 감사인 이나 사원이었는데 이 표본의 분포가 말해주듯이 중소 규모의 회계법인의 문제점을 반영해주고 있다. 이러한 회계법인들은 대형법인보다 비감사업무(주로 세무업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사원들의 윤리적 인식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러한 공인회계사들이 직면하는 가장 빈번한 윤리문제는 의뢰인들이 주로 세무보고를 수정하자는 것이었고, 또한 최고 경영층이 비윤리행위를 비난할 때 윤리문제는 축소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6. Cohen와 Pant(1989)의 연구

Treadway Commission의 허위재무보고를 축소하는 제 권고안에 착안하여 회계전문직업에 있어 고도의 윤리조항을 촉진시키는 주요그룹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특히 공인회계사, 규정 제도기관 그리고 대학 학부교육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무작위로 선정한 메세츄세츠 공인회계사 회원등에게 배포하여 Likert scale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자들로 하여금 고도의 윤리기준을 제도화 할 수 있는 11가지의 가능한 메카니즘의 유효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AICPA가 가장 유용한 메카니즘(평균 5.4, 표준편차 1.3)으로 나타났고 반면 정부규제가 가장 낮은 것(평균 3.0, 표준편차 1.7)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계법인간 상호감리는 두 번째 유요한 것(평균 4.9, 표준편차 1.5)으로 나타났다. 상호 법인간 감리제도가 소형법인에 상대적으로 분리한 비율로 많아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대형법인의 응답자간에 상호감리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인지도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 Beets와 Killough(1990)의 연구

윤리규정 준수를 위한 고발제도의 유효성을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건을 목격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고발제도에 의존하여 많은 직업단체들이 윤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윤리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이 따르는 것이라고 실무종사자들이 믿게 될 때에는 이 고발제도는 유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처벌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위험, 즉 발견될 위험, 제보될 위험, 처벌될 위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처벌가능성 = 발견될 위험 × 제보될 위험 × 처벌될 위험'으로 나타 낼 수 있다.
이 고발제도의 유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와 고객 실무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분석한 결과 (1) 사실상 감지되지 않는 윤리 위반 사항이 25%이상 되었으며 (2) 목격된 위반 사례의 경우도 겨우 절반정도만 제보된다는 것이다. (3) 제보된 위반사례가 제제조치를 따를 것인가 하는 질문의 경우 1/3경우만 제제조치를 따를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의 3가지를 결합하여 판단해 보면 윤리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고발제도는 윤리규정 위반을 억제하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닐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8. 최준환(1989)의 연구

공인회계사의 윤리수준 결정요인을 공인회계사들을 상대로 그들의 경험과 인식을 설문지 및 면접방식에 의해 분석하였다. 공인회계사의 윤리수준에 양(+)의 방향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국제화 여부, 조직화 여부, 독자적인 계약 고객수, 실무경험, 감독기관의 통제 등이었으며,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피감사회사의 압력, 조직의 규모, 감사업무 종사시간 비율등으로 나타났다.

9. 이명곤(2000)의 연구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문화와 관련된 감사인의 윤리적 문제점을 파악과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외국회계법인과 제휴형태(Big 6제휴 회계법인, Non-Big 6 제휴 회계법인 및 비제휴 회계법인)에 따른 감사인의 윤리수준차이를 분석하였다.
회계법인문화와 관련한 감사인의 윤리적 문제점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감사인은 고객의 유지와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국회계법인과 제휴유형별 윤리수준의 차이분석결과 (1)기밀누설과 관련한 사례와 경쟁자를 비방하는 경우를 다룬 사례에서는 Non-Big 6 제휴 회계법인의 윤리수준이 가장 낮았고, (2)고유위험이 높은 감사대상회사를 대상으로 감사계약체결과 관련한 사례에서는 Big 6

제휴 회계법인의 윤리수준이 가장 낮았다. (3)유대관계가 있는 비영리기관에 대한 감사수임과 관련한 사례와 고객에 대한 과잉호의와 관련한 사례에서는 비제휴 회계법인의 윤리수준이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2〉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미치는 요인

연구자	연구 목적	내 용		
Loeb	공인회계사 - 윤리적 행동 차이 평가	· 계층화 체계 : 공인회계사 위치 · 개인공인회계사 특성 : 미국공인회계사회원여부, 윤리성향, 윤리문제접촉 기회		
Goldman · Barlev(1974)	독립성 문제 발생 요인 규명	· 감사인/피감사인 이해상충 · 주주/경영자 이해상충 · 감사인 이익/전문직업 수준 상충		
Schulte(1965)	경영자문 제공 여부에 따른 독립성 차이	· 피감사회사 ⬅ 경영자문 제공 : 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상충관계 발생		
Nichols(1976)	Goldman · Barlev연구 확장	· 감사인/피감사인회사 이해상충 ↔ 인간상호관계 교환이론		
Finn, Chonko · Hunt(1988)	Partner & 윤리문제 유효성 검증	· 의뢰인 세무보고 수정 ➡ 윤리문제 발생 · 최고경영자층 비윤리적 행위비난 ➡ 윤리문제 축소		
Cohen · Pant(1989)	윤리기준제도 메카니즘 유효성 평가	· 유효성 순서 : AICPA>회계법인 상호감리>정부규제		
Beets · Killough(1990)	윤리규정 준수 & 고발제도 유효성 연구	· 고발제도 ➡ 윤리규정 준수 필요충분조건 아님		
최준환(1989)	공인회계사 윤리수준 결정 요인 규명	윤리수준	양(+)	국제화 여부, 조직화 여부, 감독기관
			음(-)	피감사회사 압력, 조직규모, 감사업무 종사시간
이명곤(2000)	회계감사인 문화 & 윤리수준 문제점 파악	· 감사인 : 고객 유지/확보 초점 · Big 6 회계법인제휴 ↔ 감사인의 윤리수준 ➡ 정신적 독립성 영향 (×)		

Ⅳ.가설수립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연구모형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감사인의 개인특성변수는 감사인의 연령, 감사인의 전업경력, 교육훈련 등의 변수가 있다[이원창(1989), Schroeder(1986), Aston and Brown (1984)]. 또한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감사인의 개인특성변수로 이근수의 연구에서는 감사인 개인의 학력, 실무경험, 교육훈련 등의 변수를 들고 있으며, 윤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교육 및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Loeb는 직업적만족, 감사 실무영역, 연령, 출신학교 등이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사인의 개인특성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DeAngelo(1981)의 연구에서는 감사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피감사회사의 수입이 감사회사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감사인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려는 요인이 줄어들며, 감사품질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Big-6 제휴법인의 감사품질이 높다는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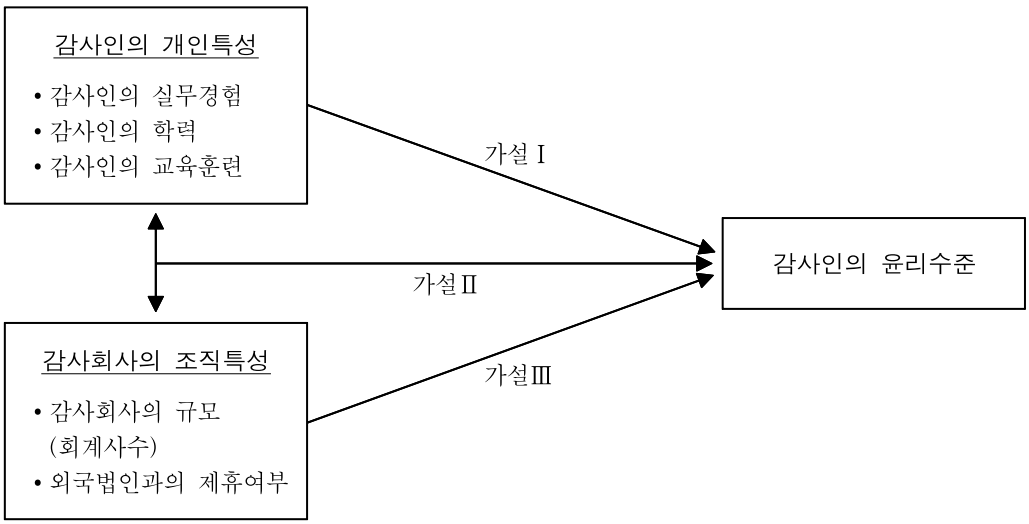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의 모형

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회사의 조직특성과 감사인의 윤리수준과의 관계를 직접 규명한 연구는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감사회사의 조직특성이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실증분석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수립하여, 감사인의 개인특성 및 감사회사의 조직특성이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가설의 수립

감사인의 개인특성은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Loeb의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개인적인 특성이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품질이 높다고 해서 감사인의 정신적 독립성인 감사인의 윤리수준이 높다는 가설을 수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감사품질은 감사인의 윤리수준이 낮더라도 감사인의 외관상 독립성과 감사기술이 높다면 감사품질은 높아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개인특성에 따른 감사인의 윤리수준의 차이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1 : 감사인의 개인특성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1-1 : 감사인의 실무경협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1-2 : 감사인의 학력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1-3 : 감사인의 교육훈련정도는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관련한 가설수립과 마찬가지로 감사품질이 높다고 해서 감사인의 정신적 독립성이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2 : 감사회사의 조직특성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1 : 감사회사의 규모는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2 : 감사회사의 외국법인 제휴여부는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감사회사의 조직특성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3 : 감사회사의 조직특성은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상호작용하여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1-1 : 외국회계법인과의 제휴여부는 감사인의 근무연수와 상호작용하여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1-2 : 외국회계법인과의 제휴여부는 감사인의 학력과 상호작용하여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1-3 : 외국회계법인과의 제휴여부는 감사인의 교육훈련과 상호작용하여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2-1 : 회계법인의 규모는 감사인의 근무연수와 상호작용하여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2-2 : 회계법인의 규모는 감사인의 학력과 상호작용하여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2-3 : 회계법인의 규모는 감사인의 교육훈련과 상호작용하여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가. 감사인의 개인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개인특성을 감사인의 근무연수, 학력 및 교육훈련변수를 선정하였다.

감사인의 근무연수는 공인회계사의 면담을 통하여 공인회계사를 합격한 후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총 연수로 측정하였는데, “1”은 1년~3년, “2”는 4년~6년, “3”은 7년~9년, “4”는 10년~13년, “ 5”는 14년 이상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감사인의 학력은 CPA의 특성상 국졸과 중졸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고졸, 대졸, 대학원졸(석사), 대학원졸(박사)로 측정하였다.

감사인의 교육훈련은 최준환(1989)의 연구에서와 같이 공인회계사의 연수, 회계잡지 및 논문, 동료 CPA와의 비공식적인 토론에서 최근 5년간의 감사인의 윤리문제가 얼마나 자주 언급되었는가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서 윤리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면 “1”, 보통이면, “4”, 자주 언급되었으면 “7”에 이르는 7-point Likert-type Scale로 측정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이 “1”에 가까울수록 감사인의 교육훈련이 낮고 “7”에 가까울수록 감사인의 교육훈련이 높다.

나. 감사회계사의 조직특성

본 연구에서는 감사회사의 조직특성변수로 공인회계사가 근무하는 회계법인의 규모와 외국회계법인과의 제휴여부로 측정하였다.

감사회사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감사인의 수, 피감사회사의 수, 매출액 등의 변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감사인의 수가 공인회계사가 가장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수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외국회계법인과의 제휴여부는 제휴가 되었으면 “예”, 되지 않았다면 “아니오”로 측정하였다.

다. 윤리수준의 측정

감사인의 윤리수준은 감사인의 정신적독립성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감사인의 윤리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회계감사와 관련된 경영자 주장 수용, 기밀누설, 유대관계가 있는 비영리기관의 감사수임, 고유위험이 높은 감사대상회사를 대상으로 감사계약체결 시도, 초도감사계약의 할인, 고객에 대한 과잉 호의, 경쟁자 비방, 불충분한 감사의 수행 등과 같은 윤리적 내용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례 중 사례 1, 사례 2 및 사례 3은 Loeb(1971), Armstrong (1985), Claypool 등(1990) 및 Cohen 등(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사례를 이용하였고, 사례 4, 사

례 5, 사례 6, 사례 7 및 사례 8은 Cohen(1995)이 사용한 사례로서 이명곤(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사례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사례에서 제시된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에 대해 “1” 행동하지 않는다, “7” 행동한다의 Likert-type Scale의 7첨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이 “1”에 가까울수록 윤리수준이 높으며, “7”에 가까울수록 감사인의 윤리수준이 낮다.

Ⅴ.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1. 가설검증

가.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윤리수준간(가설 1)의 검증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사인의 개인특성변수중 근무년수를 제외한 학력과 교육훈련이 윤리수준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인의 개인적특성이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사인의 학력과 교육훈련변수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은 기각된다.

〈표 3〉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의 Pearson Correlation

종속 \ 독립	근무년수	학 력	교육훈련
윤리수준	-.071 P=.564	-.318 P=.008***	-.265 P=.028**

(*P < .10, **P < .05, ***P < 0.01)

감사인의 학력은 영향도가 -0.645로서 95%신뢰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 1-2는 채택된다. 그러므로 감사인의 학력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감사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감사인의 윤리수준이 높아진다[1].

마지막으로 교육훈련은 영향력이 -0.217로 90%신뢰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1-3은 채택되며, 감사인이 연수, 회계잡지 및 논문, 동료 CPA와의 비공식적인 토론에서 윤리문제를 자주 언급한 경우 감사인의 윤리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학력과 교육훈련이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이외의 변수는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의 Regression Analysis

독립변수 \ 종속변수		감사인의 윤리수준			
		B	Beta	T	Sig T
감사인의 개인특성	근무년수	6.700E-02	0.092	0.738	0.463
	학력	-0.645	-0.299	-2.481	0.016**
	교육훈련	-0.217	-0.235	-1.936	0.057
	상수	5.202		7.218	0.000***
R^2		0.151			
F		0.112			
Signif F		0.013**			

(*P≤0.1, **P≤0.05, ***P≤0.01)

1) 본 연구에서 감사인의 윤리수준은 값이 높을수록 낮으며, 값이 낮을수록 감사인의 윤리수준은 높다. 그러므로 음(-)의 부호는 학력이 높을수록 감사인의 윤리수준을 측정하는 값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감사인의 윤리수준은 높다.

나. 감사회사의 특성과 윤리수준간(가설 2)의 검증

가설 2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휴여부와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의 상관관계는 -0.215로 90%신뢰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계사수와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에도 0.220으로 90%신뢰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감사회사의 특성과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의 Pearson Correlation

독립변수 / 종속변수	회계사 수	제휴여부
윤리수준	.220 P=.069	-.215 P=.078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의 설명력은 6.0%이며, Signif F값도 0.133으로 외국법인과의 제휴여부 및 회계법인의 규모변수로는 감사인의 윤리수준을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영향도 분석결과에서도 회계사수는 영향도가 8.871E-02로 나타났고, 제휴여부는 -0.407로 모두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가설 2-1과 가설 2-2는 기각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법인의 특성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감사회사의 특성과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의 Regression Analysis

독립변수 / 종속변수		감사인의 윤리수준			
		B	Beta	T	Sig T
감사회사의 특성	회계사 수 (규모)	8.871E-02	0.136	0.982	0.330
	제휴여부	-0.407	-0.147	-1.064	0.291
	상수	3.090		4.760	0.000***
R^2		0.060			
F		2.079			
Signif F		0.133			

(*P≤0.1, **P≤0.05, ***P≤0.01)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품질이 높다고 해서 감사인의 정신적 독립성이 감사윤리가 높아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설 1의 검증에서 나타난 결과인 감사인의 교육기회와 윤리문제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감사인의 윤리수준을 높일 수 있다.

다. 회계법인의 조직특성과 감사인의 개인특성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기존의 연구에서는 selection approach, interaction approach, system approach를 적합성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Van de ven & Drazin, 1985). 그러므로 본 연구의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는 적합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회계법인의 조직특성과 감사인의 개인특성의 적합도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2가지 검증기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감사인의 윤리수준을 종속변수로 하고, 감사인의 개인특성, 회계법인의 특성 및 이들의 상호작용항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중회귀식을 설정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EL_i = \alpha + \beta IC + \sum_{i=1}^{3} \gamma_i CC_i + \sum_{i=1}^{2} \delta_i IC \cdot CC_i + \varepsilon$$

여기서, ELi : 윤리수준

IC : 개인적특성

CCi : 회계법인의 특성

IC · CCi :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회계법인의 특성간의 상호작용항

α : 상수

β, γ, δ : 회귀계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사인의 교육훈련변수와 회계법인의 제휴여부간의 상호작용이 90%신뢰수준에서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3-1-3만 채택되며, 나머지 가설은 기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의 구체적인 형태가 단조증가(monotonic)인지 비단조증가(nonmonotonic)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인의 윤리수준(EL)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미분하였다(Schoonhoven, 1981).

$$\frac{\Delta EL_i}{\Delta CC_i} = \gamma_i + \delta_i IC$$

위 수식에서 (⊿ELi/⊿CCi)의 값이 0일 경우 교육훈련(IC)은 -(γi/δi)이 되며 이 값을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2.264 - 0.560 · 교육훈련 = 0

교육훈련 = 4.042857

위에서 구한 값이 교육훈련(IC)에 대한 측정범위내에 포함되면 비단조증가형태를 측정범위내에 포함되지 않으면 단조증가의 형태를 지닌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정도를 측정하는 범위(1 ~ 7)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형태가 비단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감사회사의 특성간의 적합도검증

종속 / 독립	윤리수준	
	B	유의확률
상수	5.079	0.001***
근무연수	-.387	.276
제휴여부	-1.977	.129
근무연수 * 제휴여부	.348	.266
R^2	.065	
F	1.474	
Sig	.230	

종속 / 독립	윤리수준	
	B	유의확률
상수	3.358	.084*
학력	-3.785E-02	.962
제휴여부	.662	.648
학력 * 제휴여부	-.423	.455
R^2	.125	
F	3.040	
Sig	.035**	

종속 / 독립	윤리수준	
	B	유의확률
상수	1.362	.461
교육훈련	.428	.235
제휴여부	2.264	.135
교육훈련 * 제휴여부	-.560	.058*
R^2	.153	
F	3.857	
Sig	.013**	

종속 / 독립	윤리수준	
	B	유의확률
상수	2.273	.010***
근무연수	4.168E-02	.843
회계사수	.168	.406
근무연수 * 회계사수	-4.345E-03	.938
R^2	.050**	
F	1.130	
Sig	.344	

종속 / 독립	윤리수준	
	B	유의확률
상수	5.095	.000***
학력	-1.055	.025**
회계사수	-.368	.347
학력 * 회계사수	.197	.233
R^2	.138	
F	3.462	
Sig	.021**	

종속 / 독립	윤리수준	
	B	유의확률
상수	4.634	.000***
교육훈련	-.419	.066*
회계사수	-.210	.483
교육훈련 * 회계사수	6.550E-02	.277
R^2	.111	
F	2.710	
Sig	.052*	

(*P≤0.1, **P≤0.05, ***P≤0.01)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훈련이 일정한 정도(4.042)를 넘을 경우 회계법인이 외국법인과 제휴되지 않았을 경우 감사인의 윤리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분석하는 기법인 Fisher's z검증기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isher's z검증기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의 제휴여부와 회계사수가 많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제휴에 따른 각 집단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회계법인의 제휴여부에 따른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감사인의 윤리수준 간의 Pearson Correlation

변수 / 제휴여부	근무년수	학력	교육훈련
제휴(有)	-0.058 P=0.679	-0.205 P=0.142	-0.150 P=0.283
제휴(無)	0.252 P=0.365	-0.441 P=0.100*	-0.600 P=0.018**

(*P≤0.1, **P≤0.05, ***P≤0.01)

본 연구에서는 외국법인과 제휴가 안된 법인의 경우 학력과 교육훈련이 감사인의 윤리수준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이러한 상관관계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의 표본수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Fisher's z검증을 실시하여 두 집단간의 상관관계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1) Transformation of Fisher's $z = 1.151 \log_{10} \frac{(1 + r)}{(1 - r)}$

2) Standard Z Score

$$Z = \frac{(Z_1 - Z_2)}{\sqrt{\frac{1}{(N_1 - 3)} + \frac{1}{(N_2 - 3)}}}$$

<표 9>의 Fisher's z검증 결과, 회계법인과의 제휴여부에 따른 감사인의 교육훈련과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의 상관관계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회귀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설 3-1-1, 가설 3-1-2는 기각되며, 가설 3-1-3은 채택된다. 이는 회귀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Fisher's z검증결과도 외국법인과 제휴되지 않은 회계법인의 경우 교육훈련이 높을수록 감사인의 윤리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9〉 회계법인의 제휴여부에 따른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의 Pearson Correlation의 유의성검증

---

2) 외국법인과의 제휴여부는 “1”은 제휴, “2”는 제휴가 안된 것으로 측정하였고, 감사인의 윤리수준은 값이 낮을 경우 윤리수준이 높고, 높을 경우 윤리수준이 낮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변수명	Transformation of Fisher's z		Standard Z Score
	제휴(有)	제휴(無)	
근무년수	-0.66229	0.257482	-2.86128
학력	-0.25535	-0.47335	0.67816
교육훈련	-0.15111	-0.69297	1.685679**

* α = 0.1(1.28), ** α = 0.05(1.65), *** α = 0.01(2.33)

또한, 본 연구에서는 회계사수에 따라서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의 상관관계가 차이가 있는 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빈도분석을 통하여 회계사수가 낮은 집단과 회계사수가 높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표 10〉 회계사수에 따른 분류

항 목	빈 도
회계사수(100명이하)	34
회계사수(100명이상)	35

또한, 회계사수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간의 상관관계는 <표 11>와 같다. 상관관계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계사수가 적은 집단에서 학력 및 교육훈련과 윤리수준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집단간 상관관계의 차이가 신뢰할 수 있는 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Fisher's z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변수에 있어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윤리수준간의 관계에 회계사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회귀분석의 결과와도 동일하다.

〈표 11〉 회계법인의 회계사수에 따른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의 Pearson Correlation

변수 / 제휴여부	근무년수	학력	교육훈련
회계사수 (100명이하)	-0.014 P=0.940	-0.450 P=0.008***	-0.359 P=0.037**
회계사수 (100명이상)	0.042 P=0.813	-0.081 P=0.644	-0.107 P=0.540

(*P≤0.1, **P≤0.05, ***P≤0.01)

〈표 12〉 회계법인의회계사수에 따른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의 Pearson Correlation의 유의성검증

변수명	Transformation of Fisher's z		Standard Z Score
	회계사수 (100이하)	회계사수 (100이상)	
근무년수	-0.01473	0.44757	-1.83165
학력	-0.48458	-0.08116	-1.60082
교육훈련	-0.37564	-0.10738	-1.06449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 감사인의 개인특성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감사회사의 특성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감사회사의 조직특성은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상호작용하여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개인특성변수로 감사인의 근무연수, 학력, 교육훈련변수를 선정하였고, 감사회사의 조직특성변수로 감사회사의 규모와 외국법인과의 제휴여부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인의 근무연수는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감사인의 학력과 교육훈련정도는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인의 학력과 교육훈련정도가 높을수록 감사인의 윤리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첫째, 감사회사의 규모와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사회사의 규모와 외국회계법인과의 제휴여부는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감사인의 교육훈련변수와 외국법인과의 제휴여부는 상호작용하여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법인과 제휴되지 않았을 경우 교육훈련수준이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여 높아질 경우 감사인의 윤리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의 정신적독립성이 감사인의 윤리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이나 회계감사기준의 개정에 있어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Auditor'S Ethics Level

Jae Wan Park*
Byung Hwa Lee**

<Abstract>

Mass media have recently reported the social issue of an auditor's immorality, including the false auditing and window-dressing. the auditor's ethics level is so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quality of auditing that it is required to take proper action to enhance their morality.

Although many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on a few of factors which have an effect on the quality of auditing, few researches have been done on the elements having an effect on the auditor's ethics level which is importantly related to the quality of auditing.

In addition, the studies which have been carried out so far have been mainly focused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auditor'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thics level, while few researches have been done on both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audit firms and auditor's ethics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test the hypotheses that the auditor's ethics level will be influenced by both the auditor'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audit firm, and that it will be also done by the correlation between these factors. accounting to the conceptual model of this study, three groups of hypotheses were develop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it has been shown that the auditor's job experience does not have any effect on the level of auditor's ethics, while the auditor's education an training background of ethical problem have an effect on the auditor's ethical level.

Second, it has been shown that both the organizational size of audit firm and its joint with a foreign audit firm do not have any impact on the auditor's ethics level.

Third, it has been also shown that both the auditor's education and training of ethical problem and the joint with a foreign audit firm are correlated to each other and have an effect on the auditor's level of ethics.

It seems that the abov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not only take appropriation action to enhance the auditor's ethics level, but also revise the ethics and accounting & auditing standards for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key word : auditor's ethics level, the quality of auditing, the auditor's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audit firm

* Ph. D studen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Koje College.

참고문헌

강일수, “현대회계감사”. 박영사, 1985,p. 11-12.

고흥화, 김현수, 백영승, 사회 · 행동과학연구방법의 기초(성원사, 1989), pp. 563-566.

강봉규, 통계학-연구자료처리의 통계적방법, 형설출판사, 1994, pp.398 ~ 399.

남상오, “회계이론”. 일신사, 1982, p. 74.

삼일회계법인, “회계감사론”. 법문사, 1982, p. 78.

이광남, “회계감사의 감리제도가 감사업무의 질적개선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7.

임희섭, “전문직의 윤리의식”, 산업사회의 직업윤리, 아산회사복지사업재단, 1981, p. 185.

이만우, “회계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방안”, 회계 제24호, 한국공인회계사회, 1988, p. 28.

이근수, “현대회계감사”, 법문사, 1992, p. 110.

이원창, “감사인의 특성에 따른 감사품질의 차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이명곤, “회계감사인의 문화와 윤리수준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한국산업경영학회, 2000, pp. 1-30.

조익량, 신회계감사론, 박영사, 1987, pp. 496-497.

정문종·이재맹, “회계감사 품질대용치와 산업별 전문감사인 : 우리 회계 감사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회계저널(제5권 제2호), 1996, pp. 239-274.

정문종, “대리인비용, 사적정보의 문제 및 기타 기업특성과 기업의 차별적 감사수요”, 회계학연구(제22권 제4호), 1997, pp. 91-121.

A.A. Arens and James K. Loebbecke, Auditing : An Integrated Approach, 3rd. ed.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84.

Arich Goldman and Benzion Barlev, “The Auditor-firm Conflict of Interests : Its Implication for Independence”, The Accounting Review(Oct.1974).

A.A.Schulte, “Compatibility of Management Consulting and Auditing”, The Accounting Review(July 1965).

DeAngelo, L. E. “Audit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981년 12월.

D.R. Nichils and K.H.Price, “The Audit-Firm Conflict : An Analysis Using Concepts of Exchange Theory,” The Accounting Review(Apr.1976).

D. Nachmias and C. Nachmias, Research Method in the Social Science(St. Martin's Press, 1981).

DeAngelo, L. E, “Auditor Independence, 'Low Balling' and Disclosure Regul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981년 8월.

Francis, J. R., “The Effect of Audit Firm Size on Audit Prices : A Study of the Australian Markets.” Working Paper, 1983.

J.R Francis, D.J Stokes, “Audit Prices, Product Differentiation, and Scale Economic s : Furture Evidence From the Australian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986.

Palmrose, Z.,1989, The relation of audit conract type to audit fee and hours, The Accounting Rwview 64(July).

R. A. Shockley, “Perception of Auditors' Independence : An Empirical Analysis,” The Accounting Review(October 1981).

Schroeder, M. S., I. Solomon., D. Vickrey. “Audit Quality : The Perceptions of Audit-Committee Chairpersons and Audit Partner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March 1986).

S. Dongles Beets & Larry W. Killough, “The Effectiveness of a Complaint-Based Ethics Enforcement System ; Evidence from the Accounting Profess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1990).

Zeo-vonna Palmrose “An Analysis of Audit Litigation and Audit service quality”, Accounting Review(January 1988).